

www.nrf.re.kr

함께 만드는 청렴한 NRF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매뉴얼

2018. 10

〈위탁연구과제 부가가치세 적용 범위〉

- 근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2항 및 제42조2호,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 적용범위

구분	협약 당사자	대가성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과세 여부
정부지원 과제	정부(전문기관) 주관기관	연구결과물의 소유권 주관 연구기관(산단) 귀속	대가성 없음	면세
정부지원 위탁과제	주관기관 (협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연구결과물의 소유권 주관(협동)연구기관에 귀속	대가성 있음	부가세법 규칙 제32조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개발(신이론 방법 등에 관한 연구)에 한하여 면세

※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경우, 주관연구기관이 관련 증빙서류를 국세청에 소명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인적)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8. 종료, 자선, 학술 구호(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 15호에 따른 인적(인적)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2.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2조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의 범위) 영 제42조제2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이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하여 수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구호), 그 밖의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 하거나 실비(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 학술 및 기술 발전을 위하여 학술 및 기술의 연구와 발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하 학술등 연구단체라 한다)가 그 연구와 관련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위탁연구과제 부가세 관리 절차〉

구분	면세대상	과세대상
협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법에 근거하여 면세 적용 여부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청에 제시할 면세 적용 관련 증빙자료 구비 필요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에 의거 부가세 면세 〈면세범위〉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하여 수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비에 매출부가세를 포함하여 협약 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비=공급가액+매출부가세 ※ 공급가액=직접비+간접비 ※ 매출부가세=공급가액×10%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매출부가세는 직접비의 “연구활동비” 비목에 편성 ※ 간접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제2조”에 따라 계상하되, 직접비에 편성된 매출부가세는 제외하고 계상
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비의 실 집행액으로 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비의 실 집행액으로 정산하되 국세청으로부터 환급 가능한 매입부가세는 국세청의 부가세 환급시기와 관계없이 연구기간 내에 선 제외하고 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비 집행내역 등록 시 매입에 따른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구분하여 등록 • 매출부가세 인정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출부가세=연구개발비(직접비+간접비)의 실집행액×10% ※ 단, 연구개발비를 이월하여 사용하는 경우 해당 위탁연구개발과제 종료(최종) 후 정산 시 실 집행액 적용 가능 ※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세 등 금액을 집행금액으로 포함시킨 경우 연구개발비 부당집행금액으로 회수대상에 포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 2017.06.)